

# 하남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

발의자 : 강성삼 의원

발의일 : 2022. 1.

## 1. 제안이유

- 매년 많은 수의 새들이 건축물 유리창, 투명 방음벽 등에 충돌하여 부상·폐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.
- 최근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 의식이 높아지면서, 조류 충돌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, 이에 하남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를 제정하여 야생조류가 투명구조물 충돌로 입는 피해를 줄이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대책 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3조)
- 나. 일반 건축물의 등의 설치자, 건축주 또는 소유주,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마련(안 제4조)
- 다. 야생조류 충돌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)
- 라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법인 단체 등과 교류협력을 구축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강환천)

- 본 조례안은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폐사하거나 부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,
- 우리 시도 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고층 건축물 등이 증가하고 있어 조류의 충돌 피해가 우려되어, 야생조류의 충돌 및 부상 방지를 위해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